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4.

발 의 자 : 송석준 · 고동진 · 나경원
이종배 · 김위상 · 조배숙
김미애 · 김성원 · 곽규택
인요한 · 김형동 · 박덕흠
김예지 · 김선교 의원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, 보다 효과적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명시설의 설치와 순찰, 점검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어린이공원의 설치 목적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있음에도,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이에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·관리하고, 순찰, 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, 어린이공원에서 음주, 흡연을 금지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

고자 함(안 제19조의2,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, 제49조제4항 신설, 제56조제2항).

주요내용

- 가.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(안 제19조의2)
- 나.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사고예방 및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,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(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)
- 다.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금지(안 제49조제4항 신설)
- 라.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(안 제56조제2항)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 중 “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”을 “폐쇄회로 텔레비전, 비상벨 및 조명시설 등”으로 한다.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”를 “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사고예방 및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,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누구든지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6조제2항 중 “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”를 “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,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·관리)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“공원관리청”이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	제19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·관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폐쇄회로 텔레비전, 비상벨 및 조명시설 등</u> ----- -----.
제22조(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) 제19조, 제19조의2, 제19조의3,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<u>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	제22조(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도시공원 이</u> <u>용객의 안전과 사고예방 및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,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관리</u>
<신 설>	

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 제56조(과태료) ① (생 략) ② <u>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</u>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③ (생 략)	<u>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누구든지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</u>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5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,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</u>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